

공청회 자료: 2003-09

식품접객업종 재분류방안

- ☐ 일시: 2003. 7. 22. 오후 1시 30분
- ☐ 장소: 본관 대회의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행순서〉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사

13:40~14:20 주제발표

사 회 :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팀장

주제발표 :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4:20~14:40 휴식

14:40~16:30 토론

토론자 : 김병국 경북도청 보건위생과 사무관

박호국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이주현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 사무관

이형호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 서기관

정윤희 한국소비자보호원 식품검사소 책임연구원

황선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회장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

한국휴게실업중앙회 회장

16:30~17:30 종합토론

17:30~ 폐회

목차

I. 식품접객업의 현황 / 1

II. 식품접객업의 경제적 비중 및 사회적 파급
효과 / 8

III. 외국의 제도현황 / 9

IV. 식품접객업의 업종개편의 기본방향 / 13

V. 식품접객업의 분류방안 / 16

I. 식품접객업의 현황

1. 식품접객업의 정의

□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인 혹은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음식물이나 술 또는 그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그 종류 및 시설 등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은 식품위생법임.

- 즉 식품위생법 21조1항에서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시행령 7조 8항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종류, 영9조에서는 허가 및 허가받을 업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의 분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구분됨.

〈표 1〉 식품접객업의 구분(2001년 기준)

업종	영업형태	업소수	비고
휴게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 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같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70,010	다방·저과점·기타 ¹⁾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72,253	업태코드 11개 ²⁾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19,888	-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5,168	통살통·카바레 나이트클럽디스코 텍·요정·스탠드바

주: 1) 기타에는 스타벅스와 이와 유사한 커피전문점, 버스킨라빈슨과 같은 아이스크림전문점, 던킨도너츠류의 체인점 보바류의 생과일쥬스전문점이 포함됨.

2)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분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한식, 중국식, 경양식, 일식, 뷔페식, 단일식(컨타이너하이드점·분식), 정종대포집(선술집), 인삼찜집, 이동조리, 출장조리, 퍼스트푸드 등이 있음.

2. 식품접객업의 현황

□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 및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전체업소의 수는 687,319개소임.

- 업종별 업체수는 일반음식점이 572,253개로 전체 식품접객업종 중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접객업소는 1995년 대비 33.1%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전년 대비 45%증가함.
-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의 업소 증가율이 가장 높아 1995년 대비 54.3%이고 일반음식점이 37%, 단란주점 13%, 휴게음식점 8.2%로 조사됨.
- 그러나 다른 업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단란주점의 수는 199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휴게음식점도 2001년 업소수는 1997년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휴게음식점 중 57.5%가 다방이며 27.3%가 계과점 나머지 15.2%가 기타로 구분되고 있음.
- 유흥주점의 업태내용을 살펴보면 업소수가 가장 많은 업소가 노래주점(가요주점)으로 전체 유흥업소의 52.9%를 차지함.
 - 그 다음이 룸사롱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음. 노래주점(가요주점)이 룸사롱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룸사롱 형태의 업소가 전체 유흥업소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유흥주점의 연도별 업종현황이 없어 정확한 통계를 확인 할 수 없지만 매년 12~20%의 증가를 보이는 유흥업소수는 노래주점일 가능성이 큼.

- 지역별로는 유흥업소의 10%가 서울에 소재해 있고 경기도에 18%로 가장 많이 소재해 있으며,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15.4%를 차지하고 있음.
-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전체 업소의 30.5%가 서울에 소재해 있으며, 부산이 그 다음으로 많은 16.1% 경기도가 9.5%로 세 번째로 많이 분포해 있음.

3. 식품접객업의 관계법 현황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관련 제도변화

- 식품접객업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그 동안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62년 1월 20일에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이후 1962년 6월 12일 처음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말 현재 2차례 전면개정과 39차례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령을 이루게 되었음.
- 총 41차례 전면 및 일부개정 중 식품접객업종과 관련된 개정연혁을 살펴 보면 제정이후 7차례의 전문개정을 포함하여 총 19(부칙 개정 포함)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 총 12차에 걸친 식품접객업종 재편 내용을 살펴보면 몇가지 주목할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 첫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이라는 용어가 198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 둘째, 제11차 업종 분류까지 독립 업종을 유지하던 과자점업과 다방업이 제12차 개정시에 휴게음식점업에 통합되었으며,
 - 셋째, 제12차 개정시에 『 ~ 주점업』이라는 명칭이 나타나 사실상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분류가 시작되었으며, 『인삼찜집』이 다방

업과 분류되어 고유업종으로 신설되었다.

- 넷째, 제6차 개정시부터 과자점업과 다방업의 복합 형태로 주로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장소에 설치되는 새로운 『휴게시설』이라는 업종이 탄생
- 다섯째, 제12차 개정시 현 식품접객업종 분류의 최대 문제점인 『단란주점업』이 새롭게 나타남

〈표 2〉 식품접객업종 분류 변천

구분	내 용	시기	업종분류
저정	법률저정	1962. 6	·음식점업 ·다방업 ·다류저품저조업 ·과자저조업 등
2차	전문개정	1966. 11	·음식점업 ·유품음식점업 ·다방업
4차	전문개정	1970. 7	·음식점업 ·유품음식점업 ·다과점업(다방업제외) ·간이음식점업
6차	일부개정	1973. 6	·음식점업 ·유품음식점업 ·다과점업(다방업포함) ·간이음식점업
8차	일부개정	1975. 4	·음식점업 ·유품음식점업 ·다과점업 ·간이음식점업 ·다방업
9차	전문개정	1975. 12	·전문음식점업 ·대중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일반유품음식점업 ·특수유품음식점업 ·유품전문음식점업 ·간이주점업 ·과자점업 ·다방업 ·휴게시설업
10차	전문개정	1981. 4	·대중음식점업 ·전문음식점업 ·유품음식점업 ·과자점업 ·다방업 ·휴게시설업
11차	일부개정	1982. 10	·대중음식점업 ·간이주점 ·전문음식점업 ·유품음식점업 ·과자점업 ·다방업 ·휴게시설업
12차	일부개정	1984. 4	·대중음식점업 ·인삼찜집 ·간이주점 ·전문음식점업 ·유품음식점업 ·과자점업 ·다방업 ·휴게시설업
13차	일부개정	1985. 6	·대중음식점업 ·유품음식점업 ·과자점업 ·다방업 ·휴게시설업
14차 ¹⁾	전문개정	1986. 11	·대중음식점업 ·유품음식점업 ·과자점업 ·다방업 ·휴게시설업
15차 ²⁾	전면개정	1989. 7	·대중음식점업 ·유품접객업 ·과자점업 ·다방업 ·휴게시설업
17차	전면개정	1992. 12	·휴게음식점업(다방업포함)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품주점업

주: 1) 식품접객조리·판매업소

2) 식품접객업소

□ 조세

-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업종종류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포함해서 5종류의 세금을 내게 됨.
- 이중 취득단계의 면허세는 지방세로써 광역시와 도에서 징수하게 되며, 보유단계의 조세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는 국세로써 중앙정부가 징수하며 재산세와 주민세는 지방세로써 시·군·구에서 징수하게 됨.
- 식품접객업종의 영업신고 및 허가신고를 하고자 하면 등록단계에 지불하는 세금은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임. 먼저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16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

〈표 3〉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한 면허세의 세율

(단위: 원)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제1종	45,000	30,000	18,000
제2종	36,000	22,500	12,000
제3종	27,000	15,000	8,000
제4종	18,000	10,000	6,000
제5종	12,000	5,000	3,000

주: 1)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제124조 제1항 별표)

- 제1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 제2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제3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 제4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제5종: 식품접객업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 제외함

자료: 법저처, 인터넷 법령자료(<http://www.moleg.go.kr>).

〈표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3)
(단위: 원)

매입대상	매입금액
식품영업허가(신고료 포함)	
가. 유통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기타지역	100,000
다. 일반음식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여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50,000
(2) 각 도청소재지	100,000
(3) 기타지역	70,000
라. 휴게음식점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여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300,000
(2) 각 도청소재지	200,000
(3) 기타지역	100,000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35a, 2002.』

-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됨.
-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 1조4항에 해당되는 유흥주점이 있는 지역을 과세유흥장소라고 하며 동 지역에서는 간이과세에서 제외되며 종가세로써 세율은 음식요금의 10% (2001. 12.15개정)임.

□ 건축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허가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음.

〈표 5〉 식품접객업소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구 분	허가가능용도지역	영업이 가능한 건축물용도
휴 거 음 식 점	전 지 역	근 린 생 활 시 설 주택 그 린 벨 트
일 반 음 식 점	일반주거지역이상	근 린 시 설 시 설 주택 그 린 벨 트
단 란 주 점	상 업 지 역'	근린생활시설 (150㎡미만) 위 락 시 설 (150㎡이상)
유 품 주 점	상 업 지 역	위 락 시 설

주: 1) 보건 복지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의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을 개정하였다.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 상업화 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는 단란주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가 전면 금지되게 되었다.

□ 청소년보호

- 식품접객업종중 특히 단란 및 유흥주점은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즉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음.

II. 식품접객업의 경제적 비중 및 사회적 파급효과

□ 경제적 비중

- 매출액기준으로 볼 경우, 1998년 약 4조원, 1999년 4조 6천억원, 2000년 5조 1천억원, 2001년 5조 3천억원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동 자료를 실질 GDP와 비교할 경우 사업체수로는 1998~2001년까지 평균 4.5%수준이며, 매출액기준으로는 1998~2001년까지 평균 1.0%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종사자수 규모

- 종사자수 규모에서는 전국적으로 1998년 122만명, 1999년에는 133.2만명, 2000년에는 14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0년의 143만명은 2000년 기준 경제활동인구대비 6.5%, 전국취업자대비 6.8% 수준으로 나타남.

□ 건강하지 않은 생활양식들 중 우리 사회에 커다란 손실을 주면서 예방가능성이 큰 위험행동들(risk behaviors)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음주를 들 수 있음.

-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나친 알콜섭취는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술의 조제와 판매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거나 정신활성물질(psychoactive substance)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환경 탓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알콜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의 하나임. 김광기(2002)에 의하면 15세 이상 성인 남자의 일인당 절대 알콜 소

비량은 18.4리터로(1988년) 세계 최고임.

- 김강기(2002)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주관련문제를 결과문제, 사회적 결과문제, 의존적 문제로 크게 나누어 분석한 바, 결과문제에서는 응답자의 18.7%가 보통 이상의 문제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III. 외국의 제도현황

□ 일본

- 일본의 식품위생법상 업태구분은 크게 음식점영업과 찻집영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 음식점영업은 일반식당, 요리점, 스시집, 소바집, 여관(음식취급), 레스토랑, 카페, 바, 카바레, 도시락가게, 仕出屋(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영업) 등으로 구분됨.
 - 찻집영업은 주류이외의 음료 또는 다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함.
- 경찰의 풍속관련 업태구분
 - 1호영업(카바레): 카바레 설비를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으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음식을 주문 받는 영업
 - 2호영업(음식점, 카페): 요정, 음식점, 카페 등으로 설비를 갖추고 손님에게 유흥 또는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 3호영업(나이트클럽): 나이트 클럽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고

음식을 주문하는 영업

- 4호영업(댄스홀): 댄스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영업
- 5호영업(저조도 음식점): 다방, 빠, 기타 시설로 손님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곳으로 조명을 10룩스 이하로 영업하는 곳
- 6호영업(칸막이영업): 다방, 빠, 기타 시설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쉽게 보이고 넓이가 5㎡ 이하인 칸막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소 찻집영업은 주류이외의 음료 또는 다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함.

□ 미국

- 미국의 식품위생법상의 접객업소의 업종구분은 州법에 의해 주점(Bar)과 식당(Restaurant)으로 구분됨. 주점의 경우 술이나 음료판매를 주종으로 하고 간단한 음식도 병행하여 판매할 수 있는 업소이며, 식당의 경우 완전한 형태의 식사를 주업으로 하고 술이나 음료를 병행해서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 접객업소들은 영업허가와와는 별도로 위생허가(Health Permit)를 받아야 하며 County의 Health Service Department에서 발급. 허가 유효기간은 없으며 매년 검사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1년간 검사수수료는 County마다 또는 업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 미국의 경우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州법에 의한 주류통제국(Alcohol Beverage Control: 州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동일함)에서 별도의 업종분류를 하고 있음. 다음은 캘리포니아州의 분류방법임.
 - Type 40: (On-sale Beer) 주점 또는 Tavern에 해당되며 맥주만을 판

매해야 하며, 샌드위치나 스낵을 같이 판매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주류소비는 불법이나 출입은 허용됨.

- Type 41: (On-sale Beer and Wine) 식당에 주어지는 허가의 일종이며 맥주와 포도주류만이 판매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출입이 허용됨.
 - Type 42: (On-sale Beer and Wine-Public Premises) 주점이나 Tavern으로 맥주와 포도주까지 판매가 가능한 곳으로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임.
 - Type 47: (On-sale General-Eating Places) 식당에서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임. 미성년자가 출입은 할 수 있으며 식사가 제공되어야 함.
 - Type 48: (On-sale General-Eating Premises) 주점이나 Night Club에 주어지는 허가로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다. 또한 식사제공이 되지 않아도 됨.
 - Type 61: (On-sale Beer-Public Premises) 주점이나 Tavern에 주어지는 허가로 맥주만을 판매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식사제공이 되지 않아도 됨.
- 식품위생법과 주류통계국 외에도 경찰에서 종속에 따른 별도의 허가 (Entertainment Permit)를 관리하며 업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州마다 다른 종속허가 분류를 가지고 있으나 거의 유사한 형태임.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찰종속관련 업태구분 임.
- Cafe Entertainment and Shows(CES): 모든 종류의 실험공연을 의미하며 출연하는 사람이 1인 이상인 경우 모두 해당됨.
 - Adult Cabarets: CES의 일종이나 공연의 내용이 성적노출이 심한

경우에 해당됨.

- Dance Hall: 대중이 모여 춤을 추는 업소를 의미함.
 - Teenage Dances: 13세 이상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춤을 추는 업소(이 경우 시설 및 조도 등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된다)를 의미함.
 - Hostess Dance Hall: 대중이 춤을 추는 곳이나, 춤의 상대가 업주에 의해 제공되는 곳이며 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곳임. 주류판매가 금지되며 손님과 춤을 추는 상대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조도는 무대바닥 36인치 이상에서는 1 Candle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함.
- 모든 접객업소는 시 또는 군(county)보건국에서 위생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득한 후 1년에 일정회 이상 불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County 마다 상이하며, 캘리포니아주 오렌지county의 경우 1년에 4회).
-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주류에 따라 ABC(Alcohol Beverage Control) 지부에 신청서를 내야하며 ABC는 신청인에 대한 전과조회, 재원조달내역조사, 운영인과 자금조달인과 동일인 인지의 여부조사, 신청지역의 구역검토(교회, 학교, 놀이터 주변은 허가하지 않음), 지역내 주류판매업소의 수 등을 검토한 후 최종결정을 내림.

IV. 식품접객업의 업종개편의 기본방향

□ 관리·감독차별측면에서의 식품접객업분류

- 식품접객업에 대해 업종분류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정부의 관리상 차별화에 있음.
- 우선 위생만을 고려한다면 식중독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소와 낮은 업소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봄.
 - 여타 업종도 제공되는 음식물의 성격상 부패나 변질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반음식점수준의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위생의 기준에서는 업종구분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구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봄.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등은 위생측면에서는 일반음식점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봄.

□ 다음으로 풍속의 기준에서 업종을 구분하는 경우, 풍속에 저촉되는 개별 서비스행위에 대한 관리차원의 차별화가 있어야만 함.

- 결론적으로 춤, 노래, 술, 여성접객원, 룸과 같은 은밀한 내부시설 등이 풍속의 위배강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사회통념상 결론지을 수 있음.
- 현재 풍속관련 영업의 내용은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을 알 수 있음.

〈표 6〉 풍속관련업소의 풍속정도 및 규모별 구분

서비스내용	업종명	풍속행위 정도	평균업소 면적규모	비고
술+춤+연주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락카페, 라이브카페	2	4	룸이 없는 시설, 나이트의 경우 음악은 DJ를 활용하고 주로 호텔부속 나이트클럽으로 젊은 고객층이 대다수임. 카바레의 경우 1인 이상의 밴드가 생음악을 연주함.
술+노래+연주	변태일반음식점업	1	1	연주는 주로 1인 독주 상호명은 일정하지 않음.
술+노래+여성 접객원	스탠드바, 변태일 반음식점업	3	1	상호명이 일정하지 않음. 단골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술+노래+춤+ 여성접객원	단란주점	4	1	물법으로 여성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임. 룸의 밀폐정도는 업소마다 차이가 있음. 현재 유흥주점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음. 상업지역의 업소는 가요주점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가 많으나 상업화된 주거지역에 소재한 업소는 지역제한으로 유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술+노래+여성 접객원+춤	춤사롱, 가요주점	5	2	일반적으로 춤사롱이나 가요주점의 경우 매존행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함.
술+노래+춤+ 여성접객원+ 춤+여성무희	성인나이트	6	3	룸이 있는 시설, 생음악 또는 DJ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에는 이태원지역, 그리고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업태임. 나이트클럽과 춤사롱을 겸하고 있는 형태임.

주: 1) 풍속행위정도와 업소면적도 1이 가장 낮은 수준임.

- 실제 식품접객업의 풍속관련 서비스내용의 강도는 다양하나 행정적 측면에서의 차별은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임.
- 풍속을 저해하는 서비스를 한 종류 가진 업소와 여러 종류를 가진 업소가 차이가 없으며 동일하게 유흥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IV-1] 풍속관련 실제서비스 등급과 행정의 차별화등급

풍속 행위 정도								현행 행정 차별 등급
6								2
5								
4								1
3								
2								
1								
0								0
1~6	술, 음료 음식(휴게, 일반 음식점)	술, 노래 연주(변태 일반음식점 무허가 업소)	술, 춤, 연주(나이 트클럽 등)	술, 노래, 여성접객원 (변태일반 음식점, 무 허가업소)	술, 노래, 춤, (단란주점)	술, 노래, 춤 여성 접객원 (동사동, 기요주점)	술, 노래, 춤, 춤, 여성 무희 등 선정적인 공연(성인나 이트클럽등)	유흥(2) 단란주점(1) 일반, 휴게(0)

주: 업소면적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업소가 제공하는 풍속관련 서비스의 내용만을 고려한 것임. 업소면적
이나 소음 등을 고려한다면 나이트클럽의 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음.

V. 식품접객업의 분류방안

□ 제1안

- 현행 식품접객업의 분류는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된接客업, 특히 유흥업종의 문화를 현실에 맞게 적절히 반영하여 업종을 세분화 함.
- 유흥업종을 세분화하고 면허세를 유흥강도에 따라 차등 인상함.
- 음식점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공되는 음식물의 내용에 따라 위생상 사후 관리·감독을 차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종을 재분류함.
- 현재 유흥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관리함에 따른 부작용은 유흥으로 편입될 수 없는 단란주점의 불법·변태영업, 일부 일반음식점의 변태영업, 무허가영업 등이 있을 수 있음.
- 강력한 법집행 이전에 지난 10년간 시대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현행체계의 정비와 함께 법집행이 있어야만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봄.
- 업주들에게 풍속 또는 유흥과 관련된 서비스내용을 세분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리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풍속관련 서비스를 세분화하는 경우 <표 8>과 같이 업종이 재분류 될 수 있음.
- 유흥업종은 다음과 같은 별도의 면허세부과를 검토해 볼 수 있음.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유흥의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유흥서비스의 내용이 매출에 연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식품접

객업소의 면허세 체계와는 달리 지역적 차등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규모에 대한 차등은 현재와 유사하게 두는 것을 제안해 보았음.

- 이와 같이 면허세를 현행 식품접객업면허세 수준에서 크게 인상할 것을 제안하는 배경은 유흥에 대한 페널티는 특별소비세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는 매출과 연계되어 카드장 등 각종 세금탈루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제대로 징수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
- 유흥행위에 대한 페널티는 매출에 연계하지 않고 정액으로 면허세로 부과하여 유흥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 것임.
 - 현재 유흥업소의 경우 일단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은 이후 업소 내에서 제공되는 유흥행위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나이트클럽의 경우 룸을 두어 실제로 룸사롱을 겸업하는 형태를 취하고 외국인면서의 고용 등 날로 그 정도가 심화되어 가는 실정임.
 - 따라서 면허 단계에서 면허세의 부담을 고려하도록 하여 사전에 유흥의 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임.

〈표 7〉 유흥종별 면허세체계(예시)

(단위: 만원)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유흥주점1종	50	30	15
유흥주점2종	150	100	60
유흥주점3종	500	250	150
유흥무도1종	60	40	20
유흥무도2종	400	200	100
유흥무도3종	900	500	300

주: 1) 소규모: 업소의 모든 시설면적이 45평 이하, 중규모: 업소의 모든 시설면적이 45~100평이하, 대규모: 업소의 모든 시설면적이 100평 이상

2) 면허서금액은 예시이며 최종금액은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가 협의 하여 결정하도록 됨.

□ 제29안

- 음식점업의 경우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에 따라 업종을 분류함.
- 유흥업종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일반음식점이면서 유사 유흥업을 하는 업소를 일반주점업으로 편입하였음.

□ 제39안

- 현행 식품접객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술을 주로 취급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주방, 호프방을 간이주점으로 분류하였음.
- 단란주점, 라이브카페 등 술과 음악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일반주점으로 분류하였음.

〈표 8〉 식품접객업분류 제1안

업종분류		해당업종	허가사항	비 고
음료류 전문점		커피전문점, 과일쥬스전문점, 다방, 아이스크림전문점	· 주류취급안함 · 청소년출입가능	1등급 (자율위생관리업소)
보관판매 음식점업		제과점, 떡집, 도너츠전문점	· 주류취급안함 · 청소년출입가능	2등급 (육안검사)
일반음식1종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면류전문점	· 주류취급안함 · 청소년출입가능	3등급 (육안검사+수거미생물검사)
일반음식2종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고속도로휴게소 등	· 주류취급 (고속도로휴게소는 제외) · 청소년출입가능	4등급 (육안검사+수거미생물검사+종 사자 가검물채취검사)
일반주점		호프(맥주)전문점 소주방 등	· 주류취급 · 청소년출입금지	3~4등급 (취급인종의 종류에 따라 등급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검시 기준 적용)
유흥 주점	유흥 주점 1종	극장식식당, 라이브카페, 럭키페, 코미디클럽, 변태일반음식점업 등	1) 술+노래 2) 술+각종공연(연주포함)	상업지역+상업화된 준주거지역 춤+음+여성접객원 몰허
	유흥 주점 2종	변태일반음식점업, 무허가업소	1) 술+노래 2) 술+가공공연+여성접객원	상업지역+상업화된 준주거지역 춤+음 몰허
	유흥 주점 3종	변태단란주점, 틈사동	1) 술+노래+유흥접객원+틈 (밀폐공간)	상업지역 춤 몰허 틈 설치허용
	유흥 무도 1종	럭키페와 유사한 업소	술+춤+연주	상업지역+상업화된 준주거지역 틈+여성접객원 몰허
	유흥 무도 2종	나이트클럽, 카바레	춤+춤+연주	상업지역 틈 설치몰허
	유흥 무도 3종	성인나이트	술+춤+연주(DJ포함)+ 유흥접객원+틈(밀폐공간)	상업지역 틈 설치허용

〈표 9〉 식품접객업분류 제2안

업종분류	해당업종	허가사항	비 고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과일쥬스전문점, 전통찻집, 다방	· 주류취급인합 · 청소년돌입가능 · 청소년고용일부물허 (다방 등)	· 다방
제과(음식)점	제과점, 빵집, 떡집, 아이스크림전문점, 도너츠, 샌드위치	· 주류취급인합 · 청소년돌입가능 · 청소년고용가능	· 제과점 · 전통떡집 · 아이스크림류
간이음식점	패스트푸드점, 김밥집, 분식집, 면류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실	· 주류취급인합 · 청소년돌입가능 · 청소년고용가능	· 패스트푸드점 · 분식 · 휴게소(도로)
일반음식점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 주류취급 · 청소년 고용불가	· 한식, 일식 · 양식, 중화식
간이주점	호프(맥주)전문점, 소주방 등	· 주류취급 · 청소년돌입불가 · 흡설치 물허	· 술을 주로 취급하고 · 안주류로 음식을 제공 · 노래·춤 물허
일반주점	단란주점, 스텐드바, 락카페	· 주류취급 · 청소년돌입불가 · 흡설치 물허	· 술 · 공연 · 노래, 춤
유흥주점	클럽(노래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 주류취급 · 청소년돌입불가 · 밀폐흡설치	· 술, 노래 · 춤·공연 · 여성접객원

주: 간이, 일반 유흥주점은 주류취급에 따른 면허세 인상

<표 10> 식품접객업분류 제3안

업종분류	해당업종	허가사항	비 고
휴게음식점 ¹⁾	커피전문점, 과일쥬스전문점, 다방, 아이스크림전문점, 제과점, 떡집, 도너츠전문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분식집, 면류전문점, 고속도로휴게소 등	음식류 조리·판매 (주류취급 금지)	
일반음식점 ¹⁾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등	음식류 조리·판매, 술 (주류취급 가능)	
간이주점 ¹⁾	소주방, 호프전문점, 공연음식점 등	· 술, 공연 · 청소년 출입 금지	· 각종 룸 설치물허 · 노래, 춤 물허
일반주점 ¹⁾	라이브카페, 단란주점, 스머드바, 락카페	· 술, 공연, 노래고객 겸 · 청소년 출입 금지	· 오픈룸 허용
유흥주점 ¹⁾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사롱 등	· 술, 공연, 노래고객 겸 · 유흥접객원 · 청소년 출입 금지	· 밀폐된 룸 허용

주: 1)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기존 면허제 수준 유지
2) 일반주점, 가무주점, 유흥주점은 주류취급에 따른 면허제 인상

□ 대안별 장·단점 비교

－ 제1안

장 점	① 업종분류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함. ② 단란주점 내 룸 설치를 불허함으로써 단란주점의 룸사롱 유사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③ 탄력적인 업종구분으로 현 실태를 반영하며,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유흥업 확산을 억제함.
단 점	① 제도가 너무 세분화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②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③ 특히 유흥주점의 업종 세분화와 면허제 인상으로 업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제2안

장 점	① 단란주점의 룸을 불허함으로써 단란주점의 룸사롱화 되어가는 문제를 해소 ② 현행 일반음식점 중 주류취급을 주로 하는 업소를 분리하여 청소년 보호 및 음주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임.
단 점	① 음식점의 위생 관리·감독에 대한 고려가 없음. ② 유흥업의 세분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유흥문화의 변태적 확산을 방치함.

－ 제3안

장 점	① 현 체제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편이므로 제도변화에 따른 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 혼란을 피할 수 있음.
단 점	① 유흥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흥업종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함. ② 근본적인 현실문제(각종 변태, 불법영업의 양성화)를 반영하지 못함. ③ 단란주점의 문제가 여전히 잔존함. ④ 음식점의 위생 관리·감독에 대한 고려가 없음. ⑤ 스탠드바 등이 단란주점과 동일한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아 유사유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